

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(남부골목시장, 까치산시장, 송화벽화시장, 방신전통시장)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2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건년 지역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남부골목시장, 까치산시장, 송화벽화시장, 방신전통시장의 조합 및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장명	시설명	소재지	규모(m ²)	수탁체	위탁기간
남부골목	고객지원센터	등촌로5길 62-4 (화곡4동)	213.56 (64.72평)	서울화곡동 남부시장사업 협동조합	2017. 4. 16. ~ 2022. 4. 15.
	고객주차장	곰달래로55길 4, 곰달래로251	750 (227평)		
까치산	고객지원센터	강서로12길 14 (화곡8동)	302.23 (91.24평)	까치산시장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	2017. 4. 16. ~ 2022. 4. 15.
	고객주차장		186.18 (56평)		
송화벽화	고객지원센터	강서로 263-29 (발산1동)	151.73 (45.90평)	송화벽화시장 상점가협동조합	2017. 4. 16. ~ 2022. 4. 15.
	고객주차장		661.98 (200평)		
방신	고객주차장 (노상)	방화동 578-8 (방화1동)	100 (30평)	방신전통시장 상인회	2017. 7. 1. ~ 2022. 6. 30.

○ 위탁사무내용

-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등

○ 위탁기간: 5년

- 남부골목·까치산·송화벽화 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
(2022. 4. 16. ~ 2027. 4. 15.)
- 방신전통시장 고객주차장(노상)
(2022. 7. 1. ~ 2027. 6. 30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2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, 제13조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20호) 제22조
- 「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2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- 본 동의안은 남부골목시장, 까치산시장, 송화벽화시장, 방신전통시장의 조합 및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
- 이에 따라, 지난 3월 10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 ‘적격’심의를 완료하였으며, 해당 운영사무는 전

통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, 상거래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조직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
-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·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

제4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 “시장관리자” 라 한다)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·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상인조직등” 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상인조직
2.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3. 시장관리자

제13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)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히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□ **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**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20호)

제22조(주차장 등 수익발생 위탁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(공동판매장, 고객지원센터, 공동물류창고, 태양광발전 등)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.

□ **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**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.

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